

현 행	개 정 안
2. 생활체육·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생략)	⑤(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도시정비국)①..... (신설)	제9조(도시정비국)①..... 재개발과
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및 조합주택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4. 시영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6.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③~⑤(생략)	7.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④~⑥(현행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음)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제안일자 : 1995. 11. 9.

제안자 : 운영위원회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적개선하여 의회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1995. 11. 27.~1995. 12. 3.)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

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10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적개선하여 의회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
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
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監査期間

1995. 11. 27. (월)–1995. 12. 3. (일)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천규 [간 사] 김순금 [위 원]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렬, 이응원, 이인구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영위원회실	임민상

5. 監査日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5. 11. 6. 11. 7. 11. 9. 11. 10. '95. 11. 11. ~11. 26.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5. 11. 27. '95. 12. 1. ~12. 3.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결과 처리단계	'95. 12. 4. '95. 12. 29.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의회사무국 1994. 12. 1. 이후
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
문,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
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제안일자: 1995. 11. 7.

제안자: 총무재무위원회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主要骨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1995. 11. 27.~1995. 12. 3.)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총무국(3실포함), 재무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10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5. 11. 27.(월)~1995. 12. 3.(일)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3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24개동)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장] 윤명규 [간사] 김충환 [위원]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렬,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총무국(3실포 함), 재무국, 동사무소	총무재무 위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임민상

5. 監査日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5.11. 6.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11. 7.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11. 9.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11. 10.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95. 11. 11. ~11. 26.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5.11. 27.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총무국(3실 포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총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총무과 감사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계	'95. 11. 28. '95. 11. 29. ~11. 30. '95. 12. 1. '95. 12. 2. '95. 12. 3.	- 기획예산과 감사 - 국민운동지원과 감사 - 생활체육과 감사 - 민방위과 감사 - 문화공보실 감사 - 감사실 감사 - 시민봉사실 감사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24개동 중 3~4개동 선별감사)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중인선서 - 재무과 감사 - 세무관리과 감사 - 부과과 감사 - 지적과 감사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결과 처리단계	'95. 12. 5. '95. 12. 29.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총무국(3실 포함)의 각과별, 재무국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중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일자 : 1995. 11. 7.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1995. 11. 27.~1995. 12. 3.)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9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5. 11. 27.(월)~1995. 12. 3.(일)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 (24개동)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 홍성환 [간사] 한대운 [위원] 김동희, 김순금, 박열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 회실, 동사 무소	조황현

5. 감사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단계	'95. 11. 6. 11. 7. 11. 9. 11. 10. '95. 11. 11. ~11. 26.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5. 11. 27. 11. 28. 11. 29. 11. 30. 12. 1.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시민국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감사 - 가정복지과 감사 - 위생과 감사 - 산업과 감사 - 환경과 감사 - 청소과 감사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보건소 업무보고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계	'95. 12. 2.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행정과 감사 - 보건지도과 감사 - 의약과 감사	
	'95. 12. 3.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결과 처리단계	'95. 12. 4. ~12. 29.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감사는 시민국의 각과별, 보건소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구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案)

제안일자 : 95. 11. 7.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5. 11. 27.~95. 12. 3.)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24개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12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실, 동사무소 및 현지확인으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5. 11. 27.(월)~1995. 12. 3.(일)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 (24개동)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권오범 [간 사] 박상수 [위 원]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웅봉, 이진표, 이천규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 회실, 동사 무소 현지화 인	이준범

5. 監査日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5. 11. 6. 11. 7. 11. 10. 11. 26.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5. 11. 27. '95. 11. 28. '95. 11. 29. '95. 11. 30. '95. 12. 1. '95. 12. 2. '95. 12. 3.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주택과 감사 - 도시정비과 감사 - 교통행정과 감사 - 교통지도과 감사 - 건축과 감사 *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건설관리과 감사 - 토목과 감사 - 하수과 감사 * 공원녹지과 감사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동사무소 감사 * 감사결과 강령 및 감사종료 선언	※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처리 결과단계	'95. 12. 4. ~ 12. 29.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채택 * 감사 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필요시 현지확인

6. 監査要領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로 94. 1. 1.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94 洞管內圖製作設置에 關한 行政事務

調査結果 報告書(案)

1995년 9월 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調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동 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調査期間

1995. 9. 2. (土) - 1995. 9. 23. (土) [22일간]

3. 調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총무과)

○ 동사무소 (기설치된 20개동)

○ 해당 제작업체 (을지차트, 우진기획)

4. 調査實施 經過

가. 調査班의 編成

구 분	조 사 위 원	대상기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간 사] 이인구 [위 원] 김효철, 박영길,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마포구청(총무과) 동사무소(20개동) 해당 제작업체(을 지차트, 우진기 획)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실	박관수 전문위원 이준범

나. 調査日程 및 場所

일 자	조사대상부서	조사장소	조 사 방 법	비 고
95. 9. 2. ~ 95. 9. 11.	마포구청 (총무과 및 20개동사무소)	○ 관내도 제 작설치 현 장 ○ 조사특별위 원회실	○ 조사관계 자료수합 ○ 조사계획서 수립채택(위원회)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 통보 ○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 석요구서 이송 ○ 조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 악, 정보수집활동 ○ 위원장, 간사 선임	
95. 9. 12. (火)	마포구청 (총무과)	○ 조사특별위 원회실	○ 증인선서 ○ '94동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 보고 청취 ○ 총괄질의	
95. 9.13. (水)	마포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20개동)	○ 현장	○ 증빙자료 정밀검토 및 문 제점 파악 ○ 정보수집 활동	